

##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(안)

# 심 사 보 고

### 1. 심사경과

2001. 1. 19.  
기획행정위원회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0년 12월 16일

○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18일

다. 상정일자 :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01.1.16)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 
심의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차 주 영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·지원 및 육성과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조례의 제명을 연구원 명칭과 개정내용에 맞게 변경

-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

⇒ 충북개발연구원재산관리등에관한조례

○ 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2조)

- 이사의 선임은 연구원 정관규정에 의함(제3조)
-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중복사항 삭제
  - 설립·운영, 사업, 공유재산의 대부, 자료의 제공, 사업계획등 승인, 결산서 제출, 공무원의 파견, 비밀준수, 육성 및 지도 감독, 규칙제정 등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종 만)

- 충청북도 개발연구원 설치 및 육성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북개발연구원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고,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
  - ※ 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- 2000년 1월 12일,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(법률제6121호)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가 중복되거나, 법률에서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연구원의 설립·운영, 사업, 공유재산의 대부, 자료의 제공, 사업계획 승인, 결산서 제출, 공무원의 파견, 비밀준수, 육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원의 재산운영과 관리,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며 조례의 제명을 개정되는 내용에 부합되도록 “충북개발연구원 재산관리등에 관한 조례”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- 동법 제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수정안요지

가. 수정이유

조례 제명 “충북개발연구원재산관리등에관한조례”를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(재산운영 및 관리, 이사의 추천)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수정하고자 함.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조례제명을 조례내용과 부합되도록 수정  
충북개발연구원재산관리등에관한조례  
⇒ 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가결

8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(안)
-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##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산운영 및 관리) ① 충북개발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충북개발연구원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제1항의 기금은 도와 관내 시·군(이하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과 그 외의 출연금,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.

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3조(이사의 추천)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연구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제안년월일 : 2001. 1. 16

제안자 : 박종기의원

### 1. 수정이유

조례 제명 “충북개발연구원재산관리등에관한조례”를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(재산운영 및 관리, 이사의 추천)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수정하고자 함.

### 2. 수정 주요골자

- 조례제명을 조례내용과 부합되도록 수정  
충북개발연구원재산관리등에관한조례  
⇒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

##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제명 “충북개발연구원재산관리등에관한조례”중 “재산관리”를 “운영”으로 한다.

## 조 문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충북개발연구원재산관리등에관한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(생략)</p> <p>제2조(재산운영 및 관리) (생략)</p> <p>제3조(이사의 추천)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2조(재산운영 및 관리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3조(이사의 추천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의 발취

### [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]

제8조 (임원의 선임) ③ 이사(이사장을 제외한다)는 정관에 명시된 자(이하 "당연직 이사"라 한다)와 원장이 학계·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3조 (운영재원)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[충북개발연구원정관]

제4조(이사)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

② 다음각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1. 도지사, 행정부지사, 기획조정실장, 경제통상국장, 건설교통국장(5명)
2.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위원(2명)
3. 원장
4. 5억원 이상의 동산·부동산을 출연한 기관단체의 장 또는 그가 추천한 자

③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학계,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.